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누출 검지구	'14.12.31. 이전 설치된 배관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14.12.31일 이전 설치배관에 공정운전조건에 대해 점검수행 및 기록·관리하는 경우와 2) '14.12.31일 이전 배관에 전기방식, 두께측정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방안 적용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배관 내압시험	예외 인정 조항 중 배관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화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의 용접부가 100%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구체화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비금속 배관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세부기준의 우선순위 조정	1)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3)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배관 비파괴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의 대상범위 일치화 및 용어정비	1)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로 문구 조정 2)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부기준 시험방법 대상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 물질 구분1부터 3을 유해화학물질로 적용하여 문구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13. ~2020. 11. 2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국명근	인천99아4339	2020.3.14	남원시	2,4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36 (청학동) 황금빌라 205호	고지서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창	경북98사7715	2020.4.23	장수군	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 14-13	고지서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홍두	전남98사8677	2020.3.23	임실군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31 (마동, 마동주공아파트)102동 703호	고지서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금수	대구98바9752	2020.2.27	장수군	400,000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12번길 10 (동대신동3가) 204호	고지서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한필호	인천80바9399	2020.3.11	오수영업소	640,000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1길 7-24 (읍내동) 경신하우스 305호	고지서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함병수	전북98사7356	2020.5.2	오수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길 5-56 (서완산동1가)	고지서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